

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24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제 목 :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2. 공고기간 : 2022. 03. 24. ~ 2022. 04. 08.
3. 직권말소 예정일자 : 2022. 04. 11.
4. 처분 근거법규 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,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

5. 공고대상 :

업종	신고번호	업소명	영업자 (법인명)	소재지
일반음식점	2020-0094928	도노텀블 신림점	안**	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70, 1층 1호

6. 공지사향

-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7항에 의거 2022년 04월 0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7. 문 의 처 :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생과
(☎02-879-7258)

**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-610호
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**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신림3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21호(2008.04.10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4(2009.01.0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296호(2010.08.1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217호(2011.07.2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74호(2012.10.1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327호(2012.11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90호(2013.03.2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13호(2013.09.2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173호(2016.06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59호(2016.11.1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80호(2017.05.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360호(2017.10.1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
2018-238호(2018.08.0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96호(2019.03.1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351호(2019.10.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159호(2020.04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31호(2021.11.1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3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(조합)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6조(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), 제65조(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의 준용)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9조(관계 서류의 공람)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1조(협의 및 의견청취 등)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(의견청취 등)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

2.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관악구청 도시계획과(☎02-879-6383, FAX 879-7832 또는 우편발송)로 의견서 【제목, 내용, 주소, 성명(날인)】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 24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2.03.24. ~ 2022.04.07. (14일)

나.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내용

1) 사업명 :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) 위 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16-55번지 일대

3) 사업면적 : 35,136.4m²

4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㉠ 성 명 :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신태산

㉡ 주 소 :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18, 2층

5)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- 아파트 8개동, 571세대(임대 98, 일반 473세대)

- 지하4층, 지상7~지상17층, 용적률 233.7%/건폐율 23.25%(이하 생략 : 관계도서 참조)

6) 주요변경사항

- 단위세대 대피공간→하향식 피난사다리로 변경

2. 용자대상 및 조건

구분	대 상	용자한도액	이율	상환방법
시설 개선 자금	일반·휴게음식점·제과점·위탁급식영업 [관악구 소재 해당 업종 사업자]	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, 업소당 1억원 이내	연리 2%	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
	식품접객업소 화장실 [관악구 소재 식품접객업소 사업자]	총 소요금액의 80%이내, 업소당 2천만원 이내	연리 1%	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
	식품제조가공업소 [관악구 소재 해당 업종 사업자]	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, 업소당 1억원 이내	연리 2%	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
육성 자금	모범음식점 [관악구 모범음식점 사업자]	음식점 운영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	연리 2%	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

※용자제외 대상

• 호프집·소주방·단란주점·유흥주점·협
오식품 취급업소 사업자

(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용자가능)

•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용자받아 신청

- 지하주차장 층고 변경(유효높이 2.3m
이상→2.7m이상)- 부대시설 위치 및 평면변경(보육시설,
경로당 등)다. 공람장소 : 관악구청 도시계획과
(02-879-6383),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
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02-873-8242)라. 의견서 제출 : 공람의견서(붙임)을 작성
후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방문, 우편발송(서울
관악구 관악로145, 6층 도시계획과) 또는
FAX(879-7832) 제출

마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
**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-611호
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 공고**2022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
용자계획을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
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
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24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2022년도 용자규모 : 1억원

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용자금 상
환후 1년 이내인 자• 동일인에 대한 중복용자(업소수와 무
관)

•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인 업소